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59876(본소), 2021나59883(반소) 판결
[토지인도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59876(본소), 2021나59883(반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26850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래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명춘, 최건섭

변론 종결 2021. 10. 15.

판결 선고 2021. 11. 19.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단268508(본소), 2020가단282777(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 소 청 구 취 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강서구 C 대 305.3m²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 부분 5.9m²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3,8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20. 10. 5.부터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9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에게 33,76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감정도 표시 10, 19, 18, 17, 16, 15, 14,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3, 12, 1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다)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2020. 9. 6.부터 2021. 9. 5.까지는 월 1,151,625원, 2021. 9. 6.부터 2022. 9. 5.까지는 월 984,900원, 2022. 9. 6.부터 2023. 9. 5.까지는 월 1,045,2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피고는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 제15호증의 1 내지 3)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준서

판사강희석

판사오연정

별지